

1. 개정이유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(법률 제17232호, '20. 4. 7. 공포, '20. 10. 8. 시행) 및 물류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이양(법률 제17007호, '20. 2. 18. 공포, '21. 1. 1. 시행)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차를 규정(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)
- 나.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·융자, 이자비용의 보전, 건축 규제 완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항 구체화(안 제12조의6 신설)
- 다.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·도로 이양됨에 따라, 기존 면적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한 구분기준 삭제(안 제13조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2에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5(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사유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.

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

신·구조문대비표

서면으로 통보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6(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대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.

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·개축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 상 최대 용적률 및 최대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사업에 보증한도,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12조의4(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를 둔다.
<신 설>	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12조의5(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사유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.
	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

<신 설>

재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6(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대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.

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

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·개축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 및 최대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사업에 보증한도,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

제13조(일반물류단지의 지정)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.

② (생략)

제13조(일반물류단지의 지정) ① 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